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19일, 윤준병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자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 정부는 2023년에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농촌빈집을 지금의 50%인 33,000호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촌빈집의 정비와 관리, 빈집정비 및 재생 활성화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적 전략을 공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촌빈집의 정비와 거래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관련 법령의 체계화가 요청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도시 빈집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농어촌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 온 바, 서로의 체계가 상이하여 행정 현장에서 업무의 중복 및 적용의 혼란이 제기된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의 일원화 또한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두 개의 제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신설

하여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 등에 있어 도시빈집과의 체계를 맞추는 등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기보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하나의 법률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정이 있거나, 같은 분야라도 내용이나 성질이 다른 다수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경우 기존 법령을 분법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

【분법의 세부기준】

-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 이해가 어려운 경우
-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현재 농어촌 빈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규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정되어 있음.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공간의 개발·정비를 위한 절차법적 기능을 가진 법률로,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 산업육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 마을정비 구역 등에 다양한 분야에 관한 조문이 혼재되어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의 구성체계】

핵심분야	주요내용
공통사항	목적, 정의, 자원 조사,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기본시행계획 등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원칙, 기본시행계획 등
농어촌산업 육성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시행계획, 농공단지 개발 기본지침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육성 시책, 절차 등
한계농지	정비 기본방침, 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등
마을정비구역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 등

「농어촌정비법」은 1995년 시행(법률 제4823호)된 이래 타법 개정을 포함하여 9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장·제목 변경, 조문 삭제, 가지 조문 추가, 조문 이관·신설 등으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고 법률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음(제정 당시 107개 조문에서 현행 155개 조문으로 증가).

따라서 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정비법」의 주요규정인 농업생산기반 등 농어촌지역 정비와 개발에 관한 사항

은 「농어촌정비법」에 유지하고,

현행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155개 중 15개 조문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낮으나, 최근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하여 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여 정비하면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